

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20일	
명 칭		대표자		운영경력 (대표자)		개 월	()
소 재 지				전 화 번 호			
시설확보	[]소유 []임차 / []독립 []복합			개관일자	()		
운영과목	[]한국어 []한국사회 이해 []기타()						

시설내역	전체 연면적	강의실		휴게실	
	m ²	m ²	개	m ²	개
		m ²	개	m ²	개
		m ²	개	m ²	개

인력현황	강사	과목명	성 명	자 격	과목명	성 명	자 격
	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						
	행정 인력 등	성 명	자 격		성 명	자 격	
	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						

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